

행정국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

□ 공포조례안 및 예산반영 현황 내역 (2024년 5월~2025년 4월)

연번	공포일	조례명	제·개정 요지	예산반영 현황	향후 반영 계획
1	'24.5.20.	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2	'24.5.20.	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(타법개정)	▶ 타 조례의 개정으로 당연직위원 명칭 개정 ※ “도시교통실장” → “교통실장”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3	'24.5.20.	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용어·표현 재정비로 사업 추진 근거 명확화, 조례와 중복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4	'24.7.15.	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(개정)	▶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겸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,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5	'24.7.15.	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(개정)	▶ 시상 종류 추가 ※ 서울특별시청년상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6	'24.7.15.	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(제정)	▶ 대외협력기금 계정 분리 및 제명 변경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	▶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7	'24.7.15.	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	▶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예산 반영 · ('25년) 가족통합 프로그램 30백만원,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300백만원 · ('26년(안)) 가족통합 프로그램 30백만원,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공모사업 300백만원	

연번	공포일	조례명	제·개정 요지	예산반영 현황	향후 반영 계획
8	'24.9.30.	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,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 함으로써 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9	'25.1.3.	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(타법개정)	▶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※ “요양을 요하는” → “요양이 필요한” 등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0	'25.1.3.	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청년, 장애인, 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범위 확대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1	'25.1.3.	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(타법개정)	▶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※ “치료를 요하는” → “치료가 필요한” 등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2	'25.1.3.	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(타법개정)	▶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※ “긴급을 요하거나” → “긴급한 경우이거나” 등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3	'25.1.3.	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타법개정)	▶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※ “긴급을 요하는” → “긴급한 경우” 등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4	'25.3.27.	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(개정)	▶ 시행계획 수립 방식 및 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으로 유연성 확보	▶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15	'25.3.27.	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(개정)	▶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비상설 체계 전환,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	▶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 3,000천원 감액 ※ 기본경비에서 위원회 경비 지출 예정	
16	'25.3.27.	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(개정)	▶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 체계 전환	▶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 1,400천원 감액 ※ 기본경비에서 위원회 경비 지출 예정	

연번	공포일	조례명	제·개정 요지	예산반영 현황	향후 반영 계획
17	'25.3.27.	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(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육 지원대상의 범위를 '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'로 명문화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지원, 의료, 취업 등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 예산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'25년) 242백만원 · ('26년(안)) 242백만원 ▶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'25년) 기초생활 143백만원, 의료 310백만원, 일자리 190백만원 등 · ('26년(안)) 기초생활 116백만원, 의료 310백만원, 일자리 171백만원 등 	